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3. 12.

제 출 자 : 구미시장

1. 제안사유

- 2003. 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2003. 11.26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었으나 2003. 11. 4 의회 심의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중 라목이 신설됨으로 인한 목의 순연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연관된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에서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며,
- 구미시도시계획 조례 【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기존 자연녹지지역내 자동차 운전학원이 많이 영업중에 있으며, 또한 당초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시 민원인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누락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심의회 신설된 목에 관련된 목간 순연의 미조치로 인한 “목” 정정 조치함.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
- 자연녹지지역내의 운전학원 관련 건축물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입법 예고시 주민으로 부터 제출된 의견의 누락 및 기존 운영중인 상황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목 추가 삽입. (【별표】 16)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사목 (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동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 15 사목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15 사목의 (1)내지(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 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 할수 있는 건축물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차.(생략) 카.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u>바목</u> (1)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파.(생략)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마목, 및 아목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생략) 가.~라.(생략) 마.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동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 15 <u>바목</u>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16】 ----- ----- ----- ----- ----- 가.~차(현행과 같음) 카.----- ----- ----- ----- ----- <u>사목</u> ----- ----- 타~ 파(현행과 같음) 하.----- -----<u>사목 및</u>----- 【별표18】 ----- ----- ※(현행과같음) 가.~라(현행과 같음) 마.----- ----- ----- ----- ----- <u>사목</u>----- -----

현행	개정(안)
【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생략) 가.~아.(생략) 자.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별표15 <u>바목</u>의 (1)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별표19】 ----- ----- ※(현행과같음) 가.~아(현행과 같음) 자.----- -----<u>사목</u>----- ----- -----